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2. 5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5. 17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01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10.21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 기준등 규정 (제12조)
- 해수욕장 근무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(제13조)
-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마련 (제14조)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자치법제127조 (사용료)
-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하여 설치한 편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